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감독관법안」 의결을 전제로
제11장(근로감독관 등) 삭제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89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근로감독관법안」 의결을 전제로 제11장(근로감독관 등) 삭제	2

I. 제안경위

2025년 8월 5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근로감독관법안」 의결을 전제로 제11장(근로감독관 등) 삭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을 포함한 내용의 「근로감독관법안」¹⁾의 의결을 전제로, 법 제11장(법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을 삭제하고, 관련 제재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삭 제>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삭 제>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삭 제>

1) 「근로감독관법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990호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삭 제>

양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

<삭 제>

<삭 제>

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삭 제>

제110조(벌칙) -----

-----.

1. -----

<u>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u> 2. (생략)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 · 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u>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u> 2. (생략) 제11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u>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 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u> ③ (생략)	----<u>제83조를</u>----- 2. (현행과 같음) 제114조(벌칙) ----- ----- -----. 1. ----- ----- ----- ----- ----- ----<u>제95조 및 제100조를</u>----- ---- 2.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일원화된 법체계를 마련하여 근로감독의 표준을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근로감독관법안」을 제정하고, 해당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법 제11장 등을 삭제하는 내용임.

이러한 개정안은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심사경과에 맞추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감독관법안」이 우선 적용되어 법 적용에 있어 혼선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률에서 근로감독관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